

<별표 1>

음식물·경조사비·선물 등의 가액 범위(제16조제3항 관련)

구 분	가액
1. 음식물: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, 다과, 주류, 음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	3만원
2. 경조사비: 축의금,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·조화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	10만원
3. 선물: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	5만원

- 가. 제1호의 음식물,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의 각각의 가액은 각 호의 구분
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.
- 나. 제1호의 음식물과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. 이
경우 가액은 5만원으로 하되, 제1호 또는 제3호의 가액을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.
- 다. 제1호의 음식물과 제2호의 경조사비를 함께 수수한 경우 및 제2호의 경조사비와
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. 이 경우 가액
10만원으로 하되,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각각 초과해서는
안된다.
- 라. 제1호의 음식물,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
가액을 합산한다. 이 경우 가액은 10만원으로 하되,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
따른 가액을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.